##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1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유정주・이상헌・김경협

고영인 · 서동용 · 김민철

양이원영•박홍근•신동근

이동주・진성준・이수진

김용민 · 박재호 · 이용우

김종민 · 조승래 · 임오경

노웅래 • 이병훈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조항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2 조의2제4항 및 제5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u>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u>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
	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u>있다.</u>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